

2022년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2년 1월 6일

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직 급	직 렌	직 류	선 발 예정인원	비 고
8급	간호	간호	4명	
9급	보건	보건	6명	
	의료기술	의료기술 (임상병리사)	1명	
	의료기술	의료기술 (임상심리사)	1명	

※ 임기제 공무원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

※ 2022년 3월 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부서에 선배치되며, 향후 보건소 등에서 근무할 예정

2 시험방법 및 일정

○ (1차) 서류전형: 거주지 및 자격증 제한 등 응시요건 심사

- 원서접수: 2022. 1. 17.(월)~1. 19.(수)
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계획 발표일: 2022. 1. 25.(화)

○ (2차) 필기시험:

- 필기시험 예정일: 2022. 2. 5.(토) 관내 중고등학교

- 3과목, 과목별 20문제(4지 택 1형)

임용분야	필기시험 과목 (3과목)	비 고
간호8급	생물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	시험시간 (60분)
보건9급	생물, 환경보건, 공중보건	
의료기술9급 (임상병리사)	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	
의료기술9급 (임상심리사)	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	

-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발표일: 2022. 2. 10.(목)

○ (3차) 면접시험

- 면접시험 예정일: 2022. 2. 16.(수)
-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임 용 일: 2022. 3월 초

3 응시 요건

○ 일반 응시요건

- 국 적: 대한민국
-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4. 12. 31.이전 출생자)
- 성 별: 제한 없음
- 거주지 제한: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
 - ① 2022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
 - ② 2022. 1. 1.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

▶공통사항

1.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(≒주민등록 초본)”를 기준으로 함
2.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
3.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[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]
4.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5. 시험계획 공고일 이후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

※ **결격사유:**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·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및 임용 불가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 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자격 요건

- 시험계획 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(면허)증 소지자

직급	직렬	직류	대상 자격(면허)증
8급	간호	간호	간호사
9급	보건	보건	기술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
			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
		산업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	
		기능사 : 식품가공 ※식품가공 기능사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·연구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 요건 부합 (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/ 1년 주40시간 근무로 산정)	
	의료기술	의료기술 (임상병리사)	임상병리사
	의료기술	의료기술 (임상심리사)	임상심리사 2급 이상

※ 자격(면허)증 소지 여부는 자격증 발급 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(취득)일 기준

※ 추후 임용등록일까지 자격(면허)가 유효하여야 함.

○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

가산비율	적용분야	비고
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-적용:간호8급, 보건9급 -미적용: 의료기술9급	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% 초과할 수 없음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바람.
[응시원서 접수: 2022. 1. 17.(월)~1. 19.(수)]
- 응시원서 제출 기한 이후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은 응시자는 필기 시험 전일 18:00까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에 증명서 제출해야 가점 적용 가능함.
-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지청(보훈상담센터☎1577-0606)에 문의하여 확인받아야 함.

6**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제출**

○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제출

- 시험공고: 2022. 1. 6.(목)
- 원서접수: 2022. 1. 17.(월)~1. 19.(수) 18:00까지
(공휴일 제외, 마감 후 추가·수정접수 불가)
- 접수방법: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
- 응시수수료: 5,000원 / 원주시청 1층 민원과 6번 창구 수입증지 납부

【방문 접수】

- 접수처: 원주시청 7층 총무과 인사팀 (대리접수 가능)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
-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(6번창구)에서
응시수수료(5,000원 수입증지) 납부 후 응시원서에 수입증지 날인
※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

【등기우편 접수】

- 주소지: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총무과 인사팀 (무실동, 원주시청) (우 26384) 채용담당자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(택배·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)
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
※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
- 우편접수자 응시번호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전송 예정
- 우편접수자 응시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주시청 7층 총무과 인사팀 방문하여 수령(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)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: 2022. 1. 25.(화)

○ 필기시험 예정일 : 2022. 2. 5.(토) 관내 중고등학교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: 2022. 2. 10.(목)

○ 면접시험 예정일 : 2022. 2. 16.(수)

○ 최종합격자 합격자 발표 : 2022. 2. 18.(금)

○ 임용후보자 등록 : 2022. 2. 23.(수)

○ 임 용 일 : 2022. 3월 초

※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.

【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】

① 응시원서 1부 [별지 1호 서식]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2매) 부착
- 응시수수료 : 5,000원
 - 수입증지 구입처: 원주시청 1층 민원과(6번창구)
 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(이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)

② 이력서 1부 [별지 2호 서식]

③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3호 서식]

- A4용지 2페이지 내 작성
- 출생지 및 학교명 등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

④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
- 원본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임용등록 시 확인

⑤ 주민등록초본 1부

- 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, 주소변동 포함

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4호 서식]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 5호 서식]

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이력서 기재 근무처별) 각 1부

⑨ [해당자에 한함]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
※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으로 보건9급 응시할 경우 추가 제출 및 유의 사항

-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추가 제출
- *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
 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
 - 필수 기재사항 ※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
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

*근무기간

- 상근(주40시간 이상) : 경력 전부 인정
- 비상근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
-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

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- 관련 서식 별지 서식 6호 참조

-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자격 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, 당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(경력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% 이상(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% 이상, 총점 60% 이상)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, 과락(만점의 40% 미만)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(유의)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.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문자 등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.
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 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,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따라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)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(033-737-2224)으로 문의바랍니다.